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고단2349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고단2349 경범죄처벌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김범준(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전 남자친구로 2015. 7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2017. 4. 경부터 피해자의 D 계정으로 피해자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왔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4.경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던 중 2018. 3. 30. 2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D 계정에 '〇〇아, 업데이트 좀 해라. 네 집에서 꽁냥꽁냥 하던 시절이 생 생하구나, 나의 술 실수로 인해 좆됐지만 너의 얼굴이 그리워, 맛있게 나를 먹어주던 그 얼굴, 흐흐'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2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괴롭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 2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 1. D 메시지 내용, D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기재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정혜원